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82

발의연월일: 2021. 2. 3.

발 의 자:성일종·양금희·이주환

이채익 · 김영식 · 허은아

박 진 · 송석준 · 이종배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애정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로 나누어 월 475,000원~981,000 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아 각종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장애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 및"을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으로 한다.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은 "생활조정수당"으로,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교육지원회망자"는 "생활조정수당 희망자"로,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교육지원회망자"는 "생활조정수당 희망자"로,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생

활조정수당 수급자(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방법 및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제3항·제4항 및제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당"은 "생활조정수당"으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제3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제33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의4제2항"을 "제7조의10제2항 전단 및 제8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		
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	생시기) ①		
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			
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			
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			
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u>교육</u>	2 <u>교육</u>		
<u>지원 및</u> 제8조의4제1항에 따	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u>생활조정수당 및</u>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10(생활조정수당) ① 국가		
	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 처장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 야 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은 "생활조정수당"으 로,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생활 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으 로, "교육지원 희망자"는 "생활 조정수당 희망자"로,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생활조 정수당 수급자(제7조의10제1항 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 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은 월액으로 지급하고, 생활조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 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 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 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정수당의 지급방법 및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3항·제4항 및 제7조의4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수당"은 "생 활조정수당"으로, "제7조의3제1 항에 따른 수당"은 "제7조의10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으 로 본다. ④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의 지 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5. (생략)

②·③ (생 략)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 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 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 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7.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3조(벌칙) ① -----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110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II O	717 . 9	6) I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 7. ~ 11.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u>항</u>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 는 누설한 사람
- 3. (생략)
-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 2. -----제7조의10제2 <u>항 전단 및 제8조의4제2항---</u>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